

# 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(주)바이넥스 등 88개사 대표이사 귀하  
(경유)  
제목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(덱시부프로펜 성분 제제)

1. 관련 : 의약품안전평가과-6659('25.9.15.)
2. 우리 처(의약품안전평가과)에서는 유럽 의약품청(EMA)의 “덱시부프로펜”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, 국내·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 (안)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.
3. 이에 「약사법」 제1조제15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 제53조에 따라 “덱시부프로펜”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하니,
4. 귀 업체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변경명령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방법에 따라 품목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품목허가(신고)증 원본 이면(변경 및 처분사항 등)에 다음과 같이 기재할 것

변경 및 처분사항 등		
연 월 일	내 용	
2026.1.2.	사용상의 주의사항	(의약품안전평가과- , 2025.10.1.)
↑	↑	↑
변경일자	변경명령 항목 기재	변경(행정)명령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

※ 별도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설정된 첨가제를 함유한 품목에 대하여는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규정' 제17조제1항에 따라 최신의 안전성 관련 사항이 모두 기재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관리할 것

나. 품목허가(신고)증 원본에 변경명령한 내용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·관리할 것  
(다만, 전자허가증의 경우 변경반영일 이후 허가사항을 확인할 것)

다. 기타 품목허가증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 
[별표 4의3]제13호에 따를 것

5.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처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6. 참고로, 동 기간 내에 상기 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 1부  
2. 품목 및 업체현황 1부

※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(<http://endrug.mfds.go.kr>)의 상단메뉴 '고시/공고/알림' → 의약품 허가·승인 → 변경명령'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(기안자) 연구위원 허수진 *허수진* (검토자) 사무관 주진영 *주진영* (결재권자)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최희정 *최희정*  
전결 ('25. 10. 1.) *최희정*  
(협조자)

시행 의약품안전평가과-50012 (2025. 10. 1.)

우 28159 충청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/ 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  
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
전화번호 043-719-2721 팩스번호 043-719-2700 / [hsj4040@korea.kr](mailto:hsj4040@korea.kr) / 비공개(5)